

기안용지

분류 기호 문서 번호	도시415-113	(전화 번호) 75-65P3	전 결 규 정 전 결 사 항
처리 기간		제1 ~ 제2 시장 [전결]	[결재] 장
시행 일자	74.1.26.		1974.1.25 제2부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계장		임무 담당관 (국장, 과장) 시민과장 총괄계획계장 재개발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천완	1974. 1. 12 기 16 회전	기로회장 (국장)
경 수 참 조	각안장조	발 신	통 체
제 목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 결정	검인 1974. 1. 29	

제1안

수선 내부결재

1. 잠실동지구획정과 사법지주로 13동 주상건물, 신천동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 유수지로 시설 결정로자 당시 제9차 (73. 9. 14)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상의 한바 명첨상의안 및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어 도시계획법 규정에의거 건설부에 도시415-1307호 (73. 9. 25)로 제출하였으나.

2. 본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 제6호 (74. 1. 5)로 전한 위임한 사안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의거 명함과 같이 ~~별도로~~ ~~제6호~~로써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 유수지 결정 문서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상천 유수지	성동구 상천동	33. 19.4	잠실동지구획 정유지구내

정서

반원

발송

신천1유수지
신천2유수지

성동구 신천동
"

6. 4. 3
23. 5. 2
*: 법정부지 표지 착오

제 205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 결정

1. ~~법정부지~~ 도시계획 시설 (유수지) 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령 2116호(74.1.5)의 관한 규정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시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로부터~~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 결정

시설명	위치	연적면적	비고
삼천 유수지	성동구 삼천동	33. 194	정밀도지구획정
신천1유수지	" 신천동	24. 93	정밀도지구획정
신천2유수지	" "	23. 5. 2	"

*: 도여온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시민~~ 시민 ~~에게~~에 보관함.

제 205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목 동

1. 도시계획 유수지 사용 결정이 예상되는
내용은 조례 표시로 끝이 되고 ~~설명~~된다.

첨부 : 고시로 사용할 관계로면 각 1부

제 4안

수도 : 수도지침과 1회시 시장

제목 : 등록

1. 도시계획 유수지 사용 결정이 예상되는 내용
의 조례 표시로 끝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나 관계로서는
기본(기본)에 비치하여 허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
하고 본 업무 수행에 영향을 기하도록 했것

첨부 : 고시로 사용할 관계로면 각 1부

* 첨부지 : 청사출장소장, 구획정리구리장, 해수관장
내선관리구리장

제 5안

수도 : 수도지침과 (증보설장)

제목 : 고시(시)보 개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고시(시)보 개재를 의뢰하였나
개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시)보 개재기준 : 고시

나. 고시(시)보 개재 결정 : 도시계획 유수지 사용 결정

다. 내용(내용) : 도시계획 유수지 사용 결정

기록: 2018년 2월(부) 20

